

어디까지 벗어나야 처벌되나

검찰「펜트하우스」 「미란다」 사법처리 고심

법적으론 어디까지 벗
어도 되는 걸까.

검찰이 성이 잡지 「더 걸
스 오브 펜트하우스」와 연
극 「미란다」의 사법처리여
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.

서울지검 형사 3부는 27
일 한국판 「펜트하우스」 발
행인 (주)텔리큐처 대표 및
圭旻씨(35)를 미성년자보
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
한 한국가정법률지원위원회
(위원장 李元洪) 심의부장

權容徹씨 등 2명을 소환,
고발인 조사를 벌였다. 검
찰은 이날 또 피고발인 및
씨를 소환 조사하는 등 이
사건에 대한 본격 수사에
들어갔다.

검찰은 그러나 음란 여부
를 판단할 구체적 기준이
아직 마련돼 있지 않아 사
법처리 결정이 쉽지는 않
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.

형법 243, 244 조는
음란한 문서 도화 기타 물
건을 제조 반포 판매한 경
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
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
처하도록 돼 있으나 「음

「음란」 판단 구체적 기준 없어 국민정서 수용여부가 잣대

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
고 있지 않다.

일본이 체모가 드러난

「펜트하우스」는 대부분 가
슴을 드러내고 있으나 체
모 등이 노출된 미국판 「펜
트하우스」와는 상당한 차
이가 있다.

출산물을 전체적으로 고
려해야 한다는 것.

이 잡지발행인 및씨는
「이 잡지는 현재 시판되고
있는 「아가씨」결 앤드 걸」
등 다른 잡지에 비해 오히
려 건전한 편이라며 「검
찰이 외국의 잡지이름만을
다.

이와관련, 검찰의 한 관
계자는 「음란물여부나 외
설여부는 결국 어디까지
벗어든 되는냐의 문제가
아니라 현재 우리의 도덕
관념으로 허용될 수 있느냐
에 달려 있는 것」이라며
「학자들 전문가의 의견과
국민 여론을 종합적으로
판단, 사법처리 여부를 결
정할 수밖에 없다」고 말했
다.

(河宗大)